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의 안 번호	1139
-----------	------

2023년 9월 13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안일자 : 2023년 08월 14일

다. 회부일자 : 2023년 08월 21일

라. 상정일자

○ 제320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2023년 9월 13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가. 제안이유

○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23.5.16. 시행)으로 인하여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하 “부담금”) 체납 시 징수하는 가산금 부과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사무처리 비용으로 자치구에 교부하고 있는 징수교부금의 차등 교부 근거를 신설하여 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가산금 징수 비율 변경 및 산정방식 근거 신설(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 자치구 징수교부금 차등 교부 근거 신설(안 제11조제2항 단서 및 별표)
- 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승인 등 내역서 서식 수정(안 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3. 6. 15. ~ 7. 5.
- 제출의견 : 없음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3.5.16. 시행)으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 체납 시 징수하는 가산금 부과체계가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자치구의 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징수교부금 일괄 교부방식을 (3%) 변경하여 차등 교부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기 개정된 법령 등 내용을 반영하여 동 조례 문구와 별지 서식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용어 정의 관련(안 제2조제1호)

- 안 제2조제1호는 '20년 개정·시행(6월 개정, 9월 시행)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제1항¹⁾을 인용하여 동 조례 “부담금”의 용어정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임

1)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대상)

①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고시된 대도시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내야 한다.

- 다만, 향후 상위법령 변경에 따라 조례 개정이 필요하고 개정 지연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적기 반영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 상위 법령 목적 등에 부합하도록 서식 수정 관련(안 제4조제1항)

- 안 제4조제1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서 부담금 납부고지발부 시에 “납부대상·납부금액·납부기한·납부장소 등”을 기재토록 규정하고 있어 동 법의 목적과 내용에 부합하는 납부고지서 사용을 위해 관련 법령 별지서식²⁾을 준용하고자 하는 것임
- 현 조례의 부담금 납부고지서 양식³⁾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전산용1)인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등의 결과(승인 여부) 통지” 공문 양식으로 서울시는 그동안 부담금 납부와 관련 없는 서식을 잘못 운용했던 사항을 상위법령 규정에 맞는 서식으로 변경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향후 조례 개정 입안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2)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및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8호 서식

3)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전산용1)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등의 결과(승인 여부) 통지”

■ 부담금 납부기한 연기사유 추가 관련(안 제5조)

- 안 제5조는 '13년 8월 법 제11조의4제3항⁴⁾ 신설('13.8.6.)로 부담금의 납부기한 연기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고 연기 사유를 구체적으로 영⁵⁾에 규정('14.2.5.)함에 따라 이를 조례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동 개정안은 '13년도에 개정된 관련 법령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 시기가 지연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아 부담금 납부기한 연기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서울시는 추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적기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가산금 부가 기준 관련(안 제7조제1항, 제2항 신설)

- 안 제7조는 '22년 11월 법 개정 후 '23년 5월 시행된 '체납된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산정방식⁶⁾'을 동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관련

4)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부기한 등)

③시·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의 착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따라 연기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사업의 착공 시까지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5)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방법 등)

⑦법 제11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2. 해당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인하여 사업의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3.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사업의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4. 주택건설경기가 침체되는 등 사업을 착공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조문을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가산금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안 제7조제2항⁷⁾은 법과 영에서 규정한 가산금 산정방법을 그대로 인용하여 명기한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법 및 영 개정 시 동 조례 문구를 수시로 개정해야 하며 적기에 개정하지 못할 경우 가산금 산정방식 적용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여 조례에 적기 반영해야 할 것임

※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부담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 산정방식

- (기존) 체납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 체납기간과 이자율 미고려

- (개정) 체납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

+ (체납금액×체납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6)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부기한 등)

⑤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⑥시·도지사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체납된 부담금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7)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제7조제2항 신설안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체납된 부담금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과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곱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 자치구 징수교부금 차등 교부 근거 신설 관련(안 제11조제2항 단서 및 별표)

- 안 제11조제2항은 부담금 징수율 향상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자치구별 부담금 징수율에 따라 징수교부금을 차등 교부하는 근거와 징수율에 따른 교부금 기준(별표)을 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동 항 단서 규정에서 부담금 연간 징수율이 50% 이상인 자치구에 대해 별표에서 정한 교부금을 해당 자치구에 교부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법 제17조의4제2항의 단서⁸⁾ 규정을 인용했다는 점에서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고 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별표] (안)

부담금 징수율에 따른 교부금 (제11조 제2항 단서 관련)	
부담금 징수율	교부금
50퍼센트 이상 60퍼센트 미만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6
6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8
70퍼센트 이상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10

※ 부담금 징수율(%) = $\frac{\text{현년도 징수액}}{\text{과년도 미수납액} + \text{현년도 징수결정액}} \times 100$

8)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4(부담금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② -중략- 다만,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징수율 이상으로 부담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교부할 수 있다.

- 다만, 최근 5년간 자치구별 연간 징수액 및 징수율 현황(붙임자료)을 검토한 결과 연간 징수액과 징수율이 부가금 대상의 사업규모 변경 및 소송에 따른 환급금, 과오납금 등의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단순히 부담금 징수율 50% 이상인 자치구에 대해 추가 교부금을 교부하는 것은 징수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징수율을 제고하고 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교부금 확대에 의해 시 재정 지출만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할 것임

- 따라서, 시는 조례 개정 취지인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단순 징수율 기준이 아닌 징수 대상자 및 징수 결정액의 증감, 체납자 및 체납액의 증감, 징수율 제고를 위한 추진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별도 징수율을 산정하여 실효성 있는 교부금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해 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법령 개정 내용 등 반영 서식 관련(안 별지 제4호, 제5호서식)

- 안 별지 제4호서식과 제5호서식은 각각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상복합건물”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승인·인가·준공검사 등 내역서로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자구수정 등을 위해 각각의 서식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안 별지 제4호서식과 제5호서식의 “3.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은 면제대상 사업에 대한 종류를 규정하는 것으로 법 제11조의2의 개정 내용⁹⁾을 반영하고

또한, 안 별지 제4호서식과 제5호서식의 “6. 공제액 세부 내역”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부담금 계산식의 ‘공제액’ 산정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영 제16조의2제4항의 개정 내용(’14.2.5.개정)¹⁰⁾을 인용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동 안 별지서식 개정을 위해 기존 서식과 같이 관련 법 조항의 각목의 사업을 각각 표기한 것과 다르게 법 조항을 직접 인

9)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부담금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의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에서 시행되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개정 2012. 2. 22.>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3. 다음 각 목의 사업 중 4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개정 2015. 8. 28.> - 이하 생략 -

10)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④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구역 또는 사업지역 밖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설치하거나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 가. 도로관계 법령에 의한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 나. 광역도로에 해당하는 시·군·구도
 - 다.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건설 또는 개량되는 도로
 - 라. 그 밖에 시·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도로
3.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 가.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주차장
 - 나. 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공영차고지
 - 다. 법 제2조제2호마목 및 이 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시설
 - 라. 법 제2조제2호바목 및 이 영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환승센터의 구성시설

용한 것¹¹⁾은 입법 절차상의 검토가 다소 미비했다 할 수 있는바
향후 조례 입안 과정에서 면밀히 확인하여 상위법령 인용 형식 등
을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임

- 그리고, 안 별지 제5호서식 “4. 건축연면적 내역”은 법 제11조의
3제1항에 따른 부담금 계산식의 ‘건축연면적’ 산정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영 제16조의2제6항의 개정 내용¹²⁾을 각각 인용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별지서식 개정은 타당함

11) 별지서식 제5호, 제6호
6. 공제액 세부내역

구 분(현행)	구 분(시장안)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	해당 ----- -----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구역 또는 사업지역 밖에서 도로를 설 치하는 비용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구역 또는 사업지역 밖에서 영 제16조의2제4항제2호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설치하거나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데 드는 비용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주차장, 공영차고지, 간선급행버스체계 또는 환승센터의 구성시설을 설치하거나 개량에 드는 비용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주차장, 공영차고지, 간선급행버스체 계 또는 환승센터의 구성시설을 설치하거나 개량에 드는 비용
⑭공제액 총계	⑭공제액 총계
주 : 공제액 내역은 <u>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6조 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u>	주 :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령」 제16조의2제4항에 따름

12)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⑥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연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합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연면적의 합계를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1. 지하층(주거용인 경우를 제외한다)과 건축물안의 주차장
2. 공용의 청사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에 따른 각급학교
3.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3의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
외한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이 시행
되는 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6.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의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7. 「주택법」 제2조제6호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임대주택의 연면적

(붙임자료)

년도별 자치구별 징수액 및 징수율 현황

(단위 : 천원, %)

자치구	2018		2019		2020		2021		2022	
	징수액 (징수기간 : '18. 8.1~ '18.12.31)	징수율	징수액 ('19.1.1~ '19.12.31)	징수율	징수액 (징수기간: '20.1.1~ '20.12.31.)	징수율	징수액 ('21.1.1~ '21.12.31)	징수율	징수액 ('22.1.1~ '22.12.31.)	징수율
종로구	1,560	1%	119,385	30%	238,529	51%	64,730	52%	17,396	23%
중구	20,397	1%	722,024	64%	39,399	11%	457,031	57%	0	0%
용산구	1,035,778	21%	-601	0%	531,049	23%	731,619	15%	499,736	7%
성동구	8,434	3%	11,028	30%	41,289	16%	198,951	15%	535,630	57%
광진구	55,953	15%	202,540	10%	531,356	28%	798,164	51%	208,209	55%
동대문구	80,511	8%	701,665	26%	677,262	57%	135,405	51%	70,753	41%
중랑구	184,222	8%	427,089	19%	285,606	12%	334,986	17%	77,557	6%
성북구	53,135	3%	108,199	7%	151,361	11%	18,661	2%	160,974	10%
강북구	10,711	9%	151,374	60%	53,455	51%	367,641	37%	254,926	63%
도봉구	23	9%	64,144	26%	-26,360	-6%	127,736	4%	78,071	24%
노원구	19	28%	0	0%	74,209	17%	0	0%	784,764	58%
은평구	247	19%	250,013	41%	349,255	60%	163,207	24%	318,751	31%
서대문구	-35	-26%	671,764	51%	154,274	25%	165,841	24%	158,089	21%
마포구	84,713	4%	584,711	80%	34,001	29%	138,679	20%	430,290	36%
양천구	17,114	3%	49,009	24%	93,085	24%	31,399	24%	68,770	35%
강서구	136,294	12%	247,548	26%	525,721	143%	298,626	50%	156,158	15%
구로구	1,031,741	37%	347,914	54%	250,228	50%	165,670	39%	128,113	28%
금천구	40,684	16%	105,814	46%	29,322	12%	101,513	33%	146,633	49%
영등포구	-315,034	-21%	1,068,763	40%	426,005	21%	255,463	13%	238,417	14%
동작구	259,264	9%	1,078,279	27%	832,963	29%	347,720	17%	486,899	14%
관악구	148,264	17%	322,453	36%	159,190	45%	137,828	40%	57,998	24%
서초구	3,122,506	39%	326,956	20%	748,734	43%	84,199	21%	134,982	14%
강남구	1,893,639	70%	421,245	34%	410,571	24%	806,353	41%	399,534	28%
송파구	488,180	37%	186,290	46%	122,037	3%	63,099	27%	142,235	33%
강동구	313,717	5%	3,102,229	52%	711,607	17%	1,340,703	33%	958,735	37%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임된”을 “위임한”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개량”을 “개량,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등”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전산용1)에 따른”을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및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을 준용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7조제2항에 따라”를 “제17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5조 중 “영 제17조제3항”을 “법 제11조의4제3항 및 영 제17조제3항”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회수”를 “횡수”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부담금의 100분의 3”을 “부담금액의 100분의 1”로, “부가한다”를 “징수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체납된 부담금에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과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곱

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제2항 중 “구청장에게”를 “자치구에”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담금의 연간 징수율이 50% 이상인 자치구에 대하여는 별표에서 정한 교부금을 해당 자치구에 교부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5월 16일 이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부담금 징수율에 따른 교부금(제11조제2항 단서 관련)

부담금 징수율	교부금
50퍼센트 이상 60퍼센트 미만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6
6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8
70퍼센트 이상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10

※ 부담금 징수율(%) = $\frac{\text{현년도 징수액}}{\text{과년도 미수납액} + \text{현년도 징수 결정액}} \times 100$

4. 개발면적 내역

구 분		종전(최초)내역(㎡)	변경내역(㎡)
② 전체면적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①)			
제외면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거나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하는 용지		
	영 제16조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을 위한 용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건설을 위한 용지		
	공용외의 청사용지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에 따른 각급학교 용지		
③ 제외면적 계			
④ 부과대상 개발면적(②-①-③)			

(※) 제외면적 내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에 따름

5. 용적률 내역 : ⑤()%

[적용식]

6. 공제액 세부 내역

구 분	종전(최초)내역(원)	변경내역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	원	원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구역 또는 사업지역 밖에서 영 제16조의2제4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설치하거나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데 드는 비용	원	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주차장, 공영차고지, 간선급행버스체계 또는 환승센터의 구성시설을 설치하거나 개량에 드는 비용	원	원
⑥공제액 총계	원	원

주 : 공제액 내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에 따름

7. 부담금 부과액

구 분	종전(최초)내역	변경내역
⑦부담금	원	원
공제액(⑥)	원	원
⑧경감률	()%	()%
최종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액 [(⑦-⑥)×⑧]	원	원

주 : ⑦부담금=표준개발비(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부과율(15%)×개발면적(④)×용적률(⑤)/200

주 : ⑧경감률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름

4. 건축연면적 내역

구 분		종전(최초)내역(m ²)	변경내역(m ²)
② 총 건축연면적			
부담금 면제대상 건축연면적(①)			
제외면적(※)	지하층(주거용인 경우를 제외)과 건축물안의 주차장		
	공용의 청사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에 따른 각급학교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같은 조 제14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의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주택법」 제2조제6호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임대주택의 연면적		
③ 제외면적 계			
부과대상 건축연면적(②-①-③) 또는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			

(※) 제외면적 내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6항에 따름

5. 부과대상 건축연면적 세부내역

(부과대상 건축연면적 세부내역 작성시 내용이 초과되면 별지로 작성하여 통보)

5-1. 주택부문 건축연면적 세부내역

[종전(최초)내역]

구 분	④공급면적(m ²)	층수(층)	⑤세대수(세대)	⑥면적계(m ²)(④×⑤)	⑦표준건축비(천원/m ²)	⑧부과율	부담금(원)(⑥×⑦×⑧)
계					-	-	

6. 공제액 세부 내역

구 분	종전(최초)내역(원)	변경내역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	원	원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구역 또는 사업지역 밖에서 영 제16조의2제4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설치하거나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데 드는 비용	원	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주차장, 공영차고지, 간선급행버스체계 또는 환승센터의 구성시설을 설치하거나 개량에 드는 비용	원	원
⑭공제액 총계	원	원

주 : 공제액 내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에 따름

7. 부담금 부과액

구 분	종전(최초)내역	변경내역
⑮부담금	원	원
- 주택부문 부과액	원	원
- 주택이외부문 부과액	원	원
공 제 액(⑭)	원	원
⑯경 감 률	()%	()%
최종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액 [(⑮-⑭)×⑯]	원	원

주 : ⑯경감률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름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u>위임된</u>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같은 법 제11조의7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부담금“이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u>개량</u>을 위하여 부담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말한다.</p> <p>2. ~ 3. (생략)</p> <p>제4조(부담금의 부과)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의4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전산용1)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부</p>	<p>제1조(목적) ----- ----- ----- <u>위임한</u> ----- ----- ----- ----- ----- ----- ----- ----- -----.</p> <p>제2조(정의) ----- -----.</p> <p>1. ----- ----- ----- ----- ----- ----- ----- <u>개량,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등</u>-----.</p> <p>2. ~ 3. (현행과 같음)</p> <p>제4조(부담금의 부과) ① ----- ----- ----- ----- <u>「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및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u></p>

한다.

② ~ ③ (생략)

제5조(부담금의 납부기한 연기) 납부 의무자가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기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납부 연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부담금의 분할납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신청은 부담금의 부과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를 허용할 수 있다.

1. 납부 회수는 2회로 한다.

2. 3. (생략)

제7조(부담금의 연체에 대한 가산금)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11조의4제5항에 따라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가한다.

<신설>

칙, 별지 제8호 서식을 준용한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부담금의 납부기한 연기) ---
----- 법 제11조의4제3항 및
영 제17조제3항-----

-----.

제6조(부담금의 분할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회수-----.

2. 3. (현행과 같음)

제7조(부담금의 연체에 대한 가산금)
① -----

부담금액의 100분의 1-----
----- 징수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체납된 부담금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과 1일 10만분의

제11조(권한의 위임 등) ①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사무처리 비용으로 해당 구청장에게 교부한다.

<단서 신설>

22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권한의 위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자치구에 -----

----- 다만, 부담금의 연간 징수율이 50% 이상인 자치구에 대하여는 별표에서 정한 교부금을 해당 자치구에 교부한다.

[별지 제4호서식]

- 1. ~ 2. (생략)
- 3.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

구 분
<신 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건설사업중 5년이상 임대하기 위한

[별지 제4호서식]

- 1. ~ 2. (현행과 같음)
- 3.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

구 분
<u>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대하여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의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에서 시행되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u>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
<u>법 제11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의 사</u>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으로
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시설을 시행하는 자가 동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

① 계

주 :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내역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
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4. 개발면적 내역

구 분	
제 외 면 적 (※)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귀속 또는 기부 채납하는 용지
	국민주택규모의 임대주택의 건설을 위한 용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 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 택건설을 위한 용지
	공용의 청사용지와 <u>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 례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u> 각급학교 용지
③ 제외면적 계	

업 중 4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민
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
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으로서 「주택법」 제2조제6호의 ----
-----을 건설하는 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의한

----- 조성 및 주택의 건설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
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

① 계

주 :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
한 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4. 개발면적 내역

구 분	
제 외 면 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 되거나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 업시행자가 -----
	영 제16조에 따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
	공용의 청사용지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에 따른 -----
③ 제외면적 계	

④부과대상 개발면적(②-①-③)
 (※) 제외면적 내역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
 법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함

5. (생략)
 6. 공제액 세부 내역

구분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건설 및 개량 비용
지구·구역 또는 사업지역밖의 도로설치 비용
<신설>
⑥공제액 총계

주 : 공제액 내역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
 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함

7. 부담금 부과액

구분
⑦부담금
공제액(⑥)
⑧경감율
최종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액 $[(⑦ - ⑥) \times ⑧]$

주 : ⑦ (생략)
 주 : ⑧경감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
 법」 제11조의2제2항에 의함

[별지 제5호서식]

1. ~ 2. (생략)

④부과대상 개발면적(②-①-③)
 (※)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
 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에 따름

5. (현행과 같음)
 6. 공제액 세부 내역

구분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는 지 구·구역 또는 사업지역 밖에서 영 제16조의2제4 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설 치하거나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데 드는 비용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주차장, 공영차고지, 간선급 행버스체계 또는 환승센터의 구성시설을 설치하거 나 개량에 드는 비용
⑥공제액 총계

주 :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
 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
 에 따름

7. 부담금 부과액

구분
⑦부담금
공제액(⑥)
⑧경감률
최종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액 $[($

주 : ⑦ (현행과 같음)
 주 : ⑧경감률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름

[별지 제5호서식]

1. ~ 2. (현행과 같음)

3.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

구 분
<신 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건설사업중 5년이상 임대하기 위한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시설을 시행하는 자가 동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
① 계
주 :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내역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4. 건축연면적 내역

3.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

구 분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의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에서 시행되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 -----
법 제11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의 사업 중 4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주택법」 제2조제6호의 ----- -----을 건설하는 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의한 ----- 조성 및 주택의 건설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
① 계
주 :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4. 건축연면적 내역

구 분	
② 총 건축연면적	
부담금 면제대상 건축연면적(①)	
제외면적 (※)	지하층(주거용인 경우 제외)과 건물안의 주차장
	공용외 청사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
	「주택법」 제2조 제13호 : 부대시설 중 관리사무소 제14호 : 복리시설 중 주민공동시설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건축연면적
	<신 설>
	<신 설>
③ 제외면적 계	
부과대상 건축연면적(②-①-③) 또는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	

(※) 제외면적 내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5. (생략)

구 분	
② 총 건축연면적	
부담금 면제대상 건축연면적(①)	
제외면적 (※)	-----건축물----- -----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에 따른 -----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같은 조 제14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의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③ 제외면적 계	
부과대상 건축연면적(②-①-③) 또는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	

(※) :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6항에 따른

5. (현행과 같음)

6. 공제액 세부 내역

구 분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구역 또는 사업지역 밖에서 도로를 설치하는 비용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주차장, 공영차고지, 간선급행버스체계 또는 환승센터의 구성시설을 설치하거나 개량에 드는 비용
⑭공제액 총계
주 : 공제액 내역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함

7. 부담금 부과액

구 분
⑮부담금
- 주택부문 부과액
- 주택이외부문 부과액
공 제 액(⑭)
⑯경감율
최종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액 $[(⑮ - ⑭) \times ⑯]$
주 : ⑯경감율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함

6. 공제액 세부 내역

구 분
해당 -----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구역 또는 사업지역 밖에서 영 제16조의2제4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설치하거나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데 드는 비용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주차장, 공영차고지, 간선급행버스체계 또는 환승센터의 구성시설을 설치하거나 개량에 드는 비용
⑭공제액 총계
주 :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7. 부담금 부과액

구 분
⑮부담금
- 주택부문 부과액
- 주택이외부문 부과액
공 제 액(⑭)
⑯경감률
최종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액 $[(⑮ - ⑭) \times ⑯]$
주 : ⑯경감률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함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 가산금 비율 및 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수입감소
- 부담금 징수실적별 자치구 징수교부금 차등 교부에 따른 지출증가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부담금 체납 시 징수하는 가산금 비율 및 산정방식이 변경되어 세입 일부 감소가 예상되나 가산금 세입은 전체 세입 대비 그 액수가 크지 않고, (최근 3년간 연평균 가산금 세입 약 4,700만원)
※ 가산금 (기존) 체납금액의 3% → (변경) 1% + 1일당 0.00022%
- 부담금 징수교부금 교부기준 변경으로 징수율이 우수한 자치구에 대하여 지급하는 교부금 비율이 향상되어 비용 일부 증가가 예상되나, 징수율 유도를 통해 비용 대비 시 세입 증대 효과가 더욱 커 비용을 상쇄하기에 비용 추계서 미첨부 대상에 해당함('22년 대비 징수율 1% 증가시 교부금 제외 약 2억 3천만원 순 세입 증가 예상)
※ 징수교부금 (기존) 징수액의 3% 일괄교부 → (변경) 징수액의 3~10% 차등교부

4. 작성자

-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주무관 양수빈(02-2133-2253)